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(UH)[주식]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5. 7. 17.

□ 정정 사유

(1) 클래스 추가 : S, Cp, Cp-E, Cp2, Cp2-F, S-P

(2) 다른 자투자신탁 변경 사항 반영

□ 정정 내용

| 항목 | 정정전 | 정정후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| | | | |
|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| 클래스 추가 | <u>S:B5506</u> | | |
| | | <u>Cp: B5507</u> | | |
| | | <u>Cp-E: B5508</u> | | |
| | | <u>Cp2: B5509</u> | | |
| | | <u>Cp2-F: B5510</u> | | |
| | | <u>S-P: B5511</u> | | |
|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| | | | |
|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| | <u>S:B5506</u> | | |
| | 클래스 추가 | <u>Cp: B5507</u> | | |
| | | <u>Cp-E: B5508</u> | | |
| | | <u>Cp2: B5509</u> | | |
| | | Cp2-F: B5510 | | |
| | | <u>S-P: B5511</u> | | |
|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| 연혁 기재 | 2014.12.30 : 투자신탁 최초 | | |
| | | <u>설정</u> | | |
| | בקיוו | 2015.07.17 : 클래스 추가(S, | | |
| | | <u>Cp, Cp-E, Cp2, Cp2-F, S-P)</u> | | |
| 5. 운용전문인력 | 2015. 4. 30. | 2015. 6. 30. | | |
|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 | 2013. 4. 30. | 2013, 0, 30, | | |
| | | <u>S클래스(펀드코드 : B5506) 집</u> | | |
|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| 클래스 추가 | 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 | | |
| 나. 종류형 구조 | | 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 | | |
| | | <u>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</u> | | |



| | |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
| | |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 |
| | | 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 |
| | | <u>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</u> |
| | | <u> </u> |
| | | <u>Cp클래스(펀드코드 : B5507)</u> |
| | |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 |
| | | 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|
| | |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|
| | |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 |
| | | 되지 않는 수익증권 |
| | | <u>Cp-E클래스(펀드코드: B5508)</u> |
| | |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 |
| | | 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|
| | |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|
| | | 수 있으며, 인터넷을 통하여 가 |
| | | 입하는 투자자 |
| | | Cp2클래스(펀드코드: B5509) |
| | |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|
| | |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 |
| | | <u> 좌를 설정한 자</u> |
| | | Cp2-F클래스(펀드코드 : |
| | | B5510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|
| | | <u>및 퇴직연금보험</u> |
| | | S-P클래스(펀드코드 : B5511) |
| | |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 |
| | | 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 |
| | | 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 |
| | | 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 |
| | | 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|
| | | 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 |
| | | 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 |
| | | <u>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</u> |
| | | 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|
| | | <u>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 |
|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|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|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 40 |
| 다. 모자형 구조 | 자투자신탁 변경 내용 반영 | <u>펀드[채권혼합] 명칭 변경</u> |
| L | | |


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⑩ S클래스 : 집합투자증권에 기준가격 적용기준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가. 매입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2) 종류별 가입자격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 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 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 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 하고자 하는 투자자 ⑪ Cp클래스 : 소득세법 제20 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<u>수익증권</u> ⑫ Cp-E클래스 : 소득세법 제 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 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클래스 추가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 자자 ③ Cp2클래스 :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 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⑭ Cp2-F클래스: 퇴직연금 집 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 ⑤ S-P클래스 : 집합투자증권 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 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 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



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 <u>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</u>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

수익증권

| | | T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| | A, Ae, C1, C2, C3, C4, Ce, | | |
| 기준가격 적용기준 | | <u>W, I, S : 30일 미만 : 이익금의</u> | | |
| 나. 환매 | 클래스 추가에 따른 | <u>70%, 30일 이상 90일 미만:</u> | | |
| 3) 환매수수료 | 환매수수료 기재 | <u>이익금의30%</u> | | |
| | | Cp,Cp-E, Cp2, Cp2-F, S-P: | | |
| | | <u>환매수수료 없음</u> | | |
|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 | | | | |
| 항 | 크괴사 호기 | 클래스 추가에 따른 수수료 기 | | |
|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| 클래스 추가 | <u>개</u> | | |
| 수수료 | | | | |
|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 | | | | |
| 항 | 클래스 추가 | 클래스 추가에 따른 수수료 기 | | |
|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| 크네프 구기 | <u>재</u> | | |
| 보수 및 비용 | | | | |
|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 | | FJAE0UI0U371 はなる40ろ | | |
| 항 |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|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40증 | | |
| 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|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| 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의 명칭 | | |
|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 | 수수료 기재 | <u>변경 및 클래스 추가 내용 반</u> | | |
| 는 보수 및 비용 | | <u>영</u> | | |
|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| | 클래스 추가에 따른 연금저축 | | |
| 사항 | 클래스 추가 | 및 퇴직연금 과세제도 기재 | | |
| 나. 과세 | | | | |
|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| | | | |
|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 | | (5)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 | | |
| 한 사항 | | 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 | | |
| 가. 의무해지 | 자본시장법 반영 | 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| | |
| | | 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| | |
| | | <u>는 제외합니다.</u> | | |
|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 | | (2) 집합투자업자는(1)의 ③ | | |
| 한 사항 | |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| | |
| 나. 임의해지 |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 | 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| | |
| | | 및 모자형전환, 존속 등 처리계 | | |
| | | 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 | | |
| | | 니다. | | |
| | | | | |

